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p>1.제안일자 및 제안자 가.제안일자 : 2001년 9월 1일 나.의안번호 : 제947호 다.제안자 : 장하운 의원의 11인</p> <p>2.개정이유 공원내 애국지사기념관, 전시관 등 공익성이 강한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전기·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그 관리·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,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.</p> <p>3.주요골자 가.안중근의사 기념관, 윤봉길의사 기념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, 전시관의 운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이 있는 시설이라고 적자인 경우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제3호) 나.위원의 해촉규정 신설(안 제21조제7항) 다.위원장의 직무대행규정을 신설(안 제22조제3항) 라.의결사항과 관련 있는 위원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(안 제23조제3항)</p> <p>4.검토의견 가.애국지사기념관 운영비지원 부분 ○ 현재 서울시 도시공원내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관 및 전시관은 남산공원의 안중근의사 기념관, 서대문 독립공원의 서대문형무소 역사관, 시민의 숲 공원의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있으며, 이중 안중근의사 기념관은 「안의사 숭모회」가,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「윤의사 기념사업회」가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고 부족한 운영비 충당을 위해 300원~1,000원 정도의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,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서대문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220원~1,100원 정도의 관람료를 받고 있음. ○ 현재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, 수입이 없는 공원시설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공공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안중근의사 기념관 등 독립운동 관련 시설들은 수입이 있는 위탁시설이므로 공공요금 등 운영비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임.</p>	<p>○ 개정조례안이 관람료 등 수입이 있는 애국지사 기념관이라 하더라도 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자인 시설인 경우 전기료,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족정기 함양과 보다 견고한 관람문화를 조성하여 운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보여짐.</p> <p>나.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운영관련 부분 ○ 현재 조례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을 2급 또는 3급 공무원, 공임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규정한 것은 도시공원에 관한 전문성과 실무를 증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함이며, 궁극적으로는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. ○ 개정조례안을 살펴볼 때 임기만료전의 위원해촉규정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 직무대행 순서 및 이해관계위원의 의결참여 배제규정의 신설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안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</p> <hr/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중 “면제하거나”를 “면제하고”로 하고,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3.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을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기념관을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(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자인 시설에 한한다.) 제2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⑦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.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 4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</p>
--	--